4 [우리 아이 자가 진단] 이런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대운동발달	100일	목을 가누지 못해요
	5개월	뒤집기를 못해요
	7개월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해요
	9-10개월	붙잡고 서지 못해요
	15개월	걷지 못해요
	만2세	계단 오르고 내려가기를 못해요
	만3세	한 발로 잠시도 서 있지 못해요
	만4세	한 발 뛰기를 하지 못해요
미세운동발달	3-4개월	주먹을 꽉 잡고 난 뒤 펴지 못해요
	4-5개월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해요
	7개월	물건들을 한 손에 쥐지 못해요
	12개월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해요
	18개월	양말 또는 장갑을 혼자 벗지 못해요
	24개월	5개 이상의 블록을 쌓지 못해요
	만3세	원을 보고 그리지 못해요
	만4세	도형을 보고 따라 그리지 못해요
언어발달	10~12개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옹알이 수준의 발성도 적어요
	18개월	말보다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해요
	18개월~만2세	간단한 두 단어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단어만 말해요
	만3세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3개의 구문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사회심리발달	3개월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아요
	6-8개월	유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아요
	12개월	달래기 어렵고 비협조적이에요
	24개월	아무 이유 없이 치고, 울고, 소리를 질러요
	만3-5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타 자가 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s.or.kr)
검사명 :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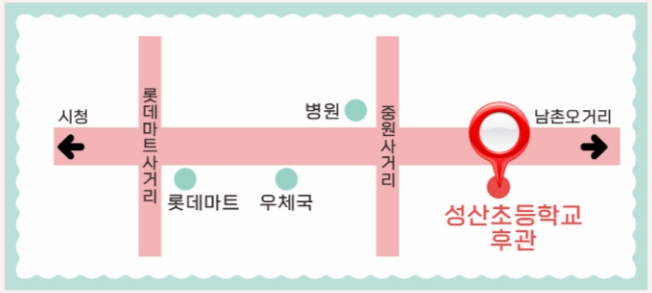
영유아발달선별검사링크

유치원(특수학급, 순회학급)목록

순	유치원명	순	유치원명	순	유치원명
1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6	새봄유치원	31	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기만초등학교병설유치원	17	새솔유치원	32	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깊은샘유치원	18	서현유치원	33	청계유치원
4	나루아이유치원	19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34	청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다원유치원	20	세교유치원	35	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6	다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21	솔빛유치원	36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7	동탄유치원	22	수노을유치원	37	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
8	동탄호수유치원	23	수현유치원	38	하길유치원
9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24	숲속초등학교병설유치원	39	하늘빛유치원
10	라온유치원	25	아이숲유치원	40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11	무봉유치원	26	안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41	향남유치원
12	문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7	영천유치원	42	화성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3	반디유치원	28	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43	화성벌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4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29	오산다온유치원	44	효행초등학교병설유치원
15	빛여울유치원	30	오산숲유치원		

특수학교(영아·유아과정) 목록

특수학교명	한우리학교	성심학교	해원학교	화성나래학교
유형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장애유형	청각장애 /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급	영.유아	유아	유아	유아
학급수	6	1	3	1



홈페이지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43,
성산초등학교 후관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표번호 : 031-377-4329



2024학년도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조기발견의 중요성

0~3세에는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경험을 통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지연의 현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정상발달과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기개입을 통하여 정상발달에 가까워지도록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의 회복과 아이의 잠재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2차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신체(시각, 청각, 지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유아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5조

- 시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 청각장애 - 건강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유치원의 장
장애가 있거나 장애 의심 영·유아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보호자 동의)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회부



특수교육지원센터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여부 심사 및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 후 교육장에게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결과를 유치원의 장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학급내용 및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영아 배치유형 (만0-2세)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학급
특수학교	영아학급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 유형으로 영아학급 또는 영아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유형 (만3-5세)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유치원에 설치된 학급
	일반학급	하루종일 일반 또래와 함께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학급
	순회학급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시설 등에 있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학급
특수학교	유아과정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설치된 유아과정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만0-2세)	특수교육대상유아(만3-5세)
무상교육	의무교육
개별화가족지원	개별화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영아관련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유아관련지원)

Q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의하여야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될 수 있습니다.